

**모 언론, 「한국 2년 연속 ‘아동 탈취국’ 오명...미국 국무부,
“한국, 집행 절차 지연”」보도 관련,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**

-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(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, 이하 “협약”이라 함)은 양육권 분쟁 등의 이유로 부모 일방에 의해 해외로 무단 이동되거나 불법 유치되어 있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 및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입니다.
 -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협약에 가입하였고, 2013년 3월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(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)을 제정하였습니다.
- 미국은 해외로 무단 이동된 자국민의 자녀가 국내로 신속 반환 되도록 하기 위한 국내법(국제아동탈취 방지 및 반환법)을 시행하고 있고, 아동이 장기간(외국 중앙당국 접수 후 1년 이상) 반환되지 아니 하면 위 법률에 따라 관련 국가를 ‘불이행 양상을 보이는 국가’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 - 미국 측의 연례 보고서는 불이행 근거로 ▲법원의 아동반환심판 사건 처리의 장기화, ▲법원의 유아인도 강제집행이 불능으로 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.
- 우리나라의 경우, 대법원 재판예규(재특 82-1)가 “의사능력이 있는 유아가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”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각급 법원 소속 집행관이 강제집행시에 “의사능력이 있는 유아가 인도를 거부하는 때”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 재판예규에 따라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

○ 아동을 부모 일방으로부터 강제로 분리하여 인도하는 집행은 일반적인 물건·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과 달리 **아동의 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**, 특히 양육권 분쟁 상황에 책임이 없는 독립된 인격체인 **아동의 의사**를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.

※ 이는 한국과 미국의 법제도 및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이며, 양국간 법치주의나 인권보호에 대한 신념, 인권보호에 대한 입장 차이로 보기 어려움

○ 법무부는 ▲협약상 중앙당국으로서 미국측 협약상 중앙당국인 미국 국무부와 직접 대화 채널을 개설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, ▲법원과도 재판예규 개정 검토 등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이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※ 위 기사에서 언급된 **일본의 법률 개정**은 이미 국내법에 반영되어 있어,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 불요

담당 부서	법무실 국제법무과	책임자	과 장	김태형 (02-2110-3661)
		담당자	사무관	최승은 (02-2110-3670)